
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2. 21(수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부동산개발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창희, 사무관 박현근, 주무관 김명순 • ☎ (044) 201-3438, 3436
	공공주택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홍목, 서기관 하재범, 주무관 김애란 • ☎ (044) 201-4505, 4508
보 도 일 시		2018년 2월 2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1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분양가상한제 피하기 ‘꼼수분양’ 안된다
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·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택지개발지구(공공주택지구 포함)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‘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’과 ‘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’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.
-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,
 - 택지개발지구(공공주택지구 포함)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
 -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그런데,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‘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’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

(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,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4항)


- (현행)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

- (개선)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,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기존 기업형임대 포함)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되어,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면서,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3월 14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
(전화: 044-201-3438, 3436, 팩스: 044-201-5661)
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
(전화: 044-201-4505, 4508, 팩스: 044-201-5659)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박현근 사무관(☎ 044-201-3438), 공공주택정책과 하재범 서기관(☎ 044-201-450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